

제 1303호
1986.7.3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영도구청
편집인: 공보관 이광우
전화: 731-6111-3
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: 735-3337

선	공보관	(인)	공보계장
접		(인)	모도계장
처리과	공보과	(인)	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	
제 525 호 : 서울특별시도범운전자운행개입택시의부표시제에관한고시	2
제 528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변경인가	5
◎ 공 고	
제 426 호 : K.S호시정차처분	6
제 428 호 :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	6
제 432 호 : 비료생산업허가품목중일부품목폐업및허가사항변경허가	7
◎ 구 공 고	
강서구제 53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의제조업제행정처분	15
◎ 사 령	

공									
합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25 호

서울특별시모범운전자운행개인택시의부표시제에관한고시

도로교통법 제 3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모범운전자 운행 개인택시의부표시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.

1986. 7.30

서울특별시장

1. 서울특별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운전자가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받고 전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는 별표 1, 2 와 같이 도색할 수 있고, 별표 3 과 같이 "모범" 표시 방법 등을 부착할 수 있다.
2. 제 1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이 고시의 별표 1, 2, 3 에 정한 도색 및 방법등을

부착할 수 없다.

3.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색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운전자가 전담 운행하지 아니할 때나, 모범운전자가 아닌 자에게, 차량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색 및 "모범" 표시 방법등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.

4. 모범운전자 운행 개인택시 외부 표시

가. 삼색선은 빨강, 노랑, 녹색으로 하고 폭은 35 mm, 길이는 차의 전장으로 하며 부착위치는 별도 1 과 같다.

나. 모범운전자 마크는 차량 좌, 우측 앞문좌 중앙에 도색하고 길 이 280 mm, 폭 200 mm로 하며 부착 위치는 별도 2 와 같다.

다. "모범(BEST DRIVER)" 표시 방법등의 높이는 235 mm, 길이 380 mm로 하되 부착위치와 색감 은 별도 3 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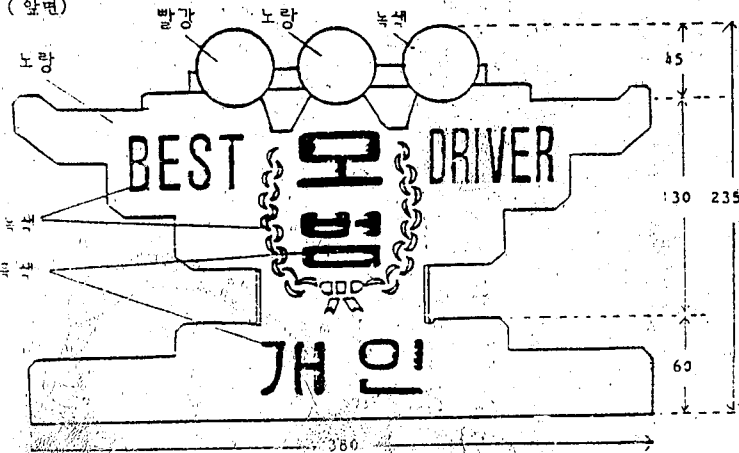
부 칙

이 고시는 1986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별표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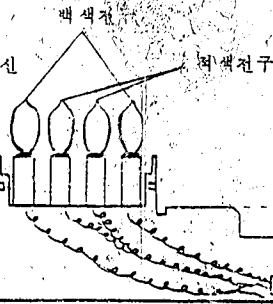
개인 표시 방법

(앞면)



(뒷면)

앞면과 동일하고 "개인" 표시대신 TAXI 표시 (발원대)

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528 호

도시 계획 사업 (도로)
실시 계획 변경 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46 호('86.5.27) 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한 석관동 168 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있어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 조 27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

인에게 보인다.

1986. 7. 30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시행지: 석관동 168-7-133번
- 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석관동 168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
- 3) 사업의 규모: 도로개설 B=8m L=300m
- 4)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청
- 5)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: 인가일 ~ '87.12.30
- 6)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: 서울특별시고시 제 246 호 ('79.9.24)
- 7) 변경인가사항: 추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, 묘지 및 도시수용법 제 4 조 3 항에 의한 이의판결인 주소, 성명: 별첨

토 지 조 서

성북구 토목과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지목	면적	현업 면적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이의 권리 종류 및 명칭	
1	석관동 168-87	대	55㎡	도로	배설기	강남구서초동 59-1 우성 아파트 102 동 303 호					

공 고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426 호

K.S 표시정자 차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하
여 다음과 같이 차분하였기 동법 시
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공
고한다.

1986. 7. 30

서울특별시 시장

- 1. 업체명 : 동양출터공업㈜
- 2. 대표 : 김순봉
- 3. 소재지 : 서울특별시구로구독산
동 336-12

- 4. 규격명 : KSC 2508 수지임팩남
- 5. 종류등급 : RS60-1.6A
- 6. 차분기간 : 1986.7.26-1986.10.25
(별도 해제시까지)
- 7. 차분사유 : KS규격미달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428 호

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

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1항 규정에
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를
취소하였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
거 이를 공고한다.

1986. 7. 30

서울특별시 시장

다 음

면허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취소일자	사유
제 808 호	동호실업	손기환	영등포구 당산6가339-2	'86.7.28	전기공사업법 제7 조 면허기준 미달
제 813 호	대전통상	이학래	" 신길동 699	"	"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32 호

비료생산업허가품목중일부품목폐업및허가사항변경허가공고

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허가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한 폐업 신고처리 및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하겠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6. 7. 30.

서울특별시장

- 1. 허가 번호: 제 1-1 호
- 2. 성 명: 홍 연 석
- 3. 주 소: 서울 강남구 방배동 734 한미빌라 202 호
- 4. 제조장소재지: 서울 도봉구 방학동 7번지
- 5. 상 호: 서울미원㈜
- 6. 비료생산업 폐업비료의 종류 및 품목: 별첨
- 7.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비료의 종류 및 품목: 별첨
- 8. 보증성분량중 유효성분량 추가보증내역: 별첨
- 9. 허가년월일: 1986년 7월 30일

비료생산업폐업신고처리품목및내역

비료의종류 및 품목	보 증 성 분 량		기타의 규격	생산능력 (년간)	허가 년월일	폐업신고 년월일
	유효성분량	유해성분량				
제3종 복합 비료 (6-5-1)	질소전량: 6% 인산전량: 5% 가리전량: 1% 유기물: 10%	1. 질소, 인산, 가 리 각각의 최 대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합을 1%에 대하여 황청산화물: 0.025% 비 소: 0.005% 아 질 산: 0.02% 뷰렛매질소: 0.01% 설 파민산: 0.005% 2. 가용성 인산 합 을 1%에 대하여 카드늄: 0.00018%	유리황산 : 0.5% 이하	60,000톤	1980. 8.27	1986. 7.30
제3종 복합 비료(4-4-7)	질소전량: 4% 인산전량: 4% 가리전량: 7% 유기물: 10%	상 등	"	48,000톤	1983. 5.10	"
제3종 복합 비료(4-7-4)	질소전량: 4% 인산전량: 7% 가리전량: 4% 유기물: 10%	"	"	48,000톤	"	"

비료생산업 허가사항변경허가내역								
비료의종류및품목		보 증 성 분 량			기타의 규 칙	생산능력 (년간,톤)	허 가 년월일	변 경 허 가 년월일
변경전	변경후	유 효 성 분 량		유 해 성 분 량				
		변경 전	변경 후					
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(액)	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(액)(일반작물 기비및 추비용)					100,000	1975. 8. 11	1986. 7. 30
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(액)	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(액)(일반작물 기비및 추비용)	질소전량: 4% 가리전량: 1%	차 와 동	염분농도: 10% 이하		120,000	1976. 11. 11	"
제3종복합비료 10-0-8	제3종복합비료 10-0-8 (원예및인안작물 수비용)	질소전량: 10% 가리전량: 8% 유기물: 10%	질소전량: 10% 가리전량: 8% 구룡성코노: 1% 수용성 붕소: 0.3% 유기물: 10%	질소, 인산, 가리 각각의 최대 주 성분량의 합계 당 의 함유율 1% 에 대하여 인산산화물: 0.025% 미 3.10.006% 아 실 산: 0.02% 붕액산화물: 0.01% 구 룡 성 코 노: 0.005%	유리형산 이리 : 0.5%	36,000	1983. 2. 16	"

비료의 종류 및 분량		보 증 성 분 량			기타의 규 격	생산능력 (년간, 톤)	허 가 년월일	변 경 가 년월일
변경전	변경후	유 효 성 분 량		유 해 성 분 량				
		변 경 전	변 경 후					
제3종복합 비료 10-0-2	제3종복합 비료 10-0-2 (일반작물 기비및 추 비용)	질소전량: 10% 가리전량: 2% 유기분: 10%	과 약 동	상 과 동	상과동	48,000	1983. 2. 16	1986. 7. 30
제3종복합 비료 8-10-8	제3종복합 비료 8-10-8 (채소, 감 귤 일반작 물 기비용)	질소전량: 8% 인산전량: 10% 가리전량: 8% 유기분: 10%	질소원량: 8% 인산전량: 10% 가리전량: 8% 구용성고토: 1% 수용성붕소: 0.3% 유기분: 10%	1. 질소, 인산, 가 리 각각의 최 대추성분량의 합계량의 1% 에 대하여 황장산화물: 0.125% 비 소: 0.006% 아 질 산: 0.02% 붕해제질소: 0.01% 실과민 산: 0.005% 2. 가용성 인산 함유율 1%에 대하여 카드늄: 0.0008%	상과동	48,000	1983. 5. 10	"

16-10 제 1303 호 시

1986. 7. 30

비료의 종류 및 품목		보 증 성 분 량				기타의 규 격	생산능력 (년간, 톤)	허 가 년월일	변 경 허 가 년월일
변 경 전	변 경 후	유 효 성 분 량		유해성 분 량					
		변 경 전	변 경 후						
제3종복합비료 6-4-5	제3종복합비료 6-4-5 (과수기비 용, 화초, 경원수용)	질소전량: 6% 인산전량: 4% 가리전량: 5% 유기물: 10%	질소전량: 6% 인산전량: 4% 가리전량: 5% 구용성구토: 1% 수용성질소: 0.3% 유기물: 10%	상과중	상과중	48,600	1983 5.10	1986 7.30	
제3종복합비료 10-12-11 (고수전용)	제3종복합비료 10-12-11 (고수기 비용)	질소전량: 10% 인산전량: 12% 가리전량: 11% 유기물: 10%	질소전량: 10% 인산전량: 12% 가리전량: 11% 구용성구토: 1% 수용성질소: 0.3% 유기물: 10%	상과중	상과중	48,000	1984 9.6	1986 7.30	

표 1303 호

표 1986.7.30 16-11

비료의 종류 및 용법		보 증 성 분 량				기타의 규 격	생산능력 (년산 톤)	허 가 년월일	변 경 가 년월일
변 경 전	변 경 후	유 효 성 분 량		유해성 분 량					
		변 경 전	변 경 후						
제 3 중복합비료 10-12-11	제 3 중복합 비료 10-12-11 (원예기 비용)	질소전량: 10% 인산전량: 12% 가리전량: 11% 유 기 물: 10%	질소전량: 10 % 인산전량: 12 % 가리전량: 11 % 구용성고토: 2 % 수용성붕소: 0.3% 유 기 물: 10 %	상과동	상과동	48,000	1984 9.6	1986 7.30	
제 3 중복합비료 9-14-12 (마늘, 양파 전용)	제 3 중복합 비료 9-14-12 (마늘, 양파 전용)	질소전량: 9% 인산전량: 14% 가리전량: 12% 유 기 물: 10%	질소전량: 9-% 인산전량: 14 % 가리전량: 12 % 구용성고토: 1 % 수용성붕소: 0.3% 유 기 물: 10 %	상과동	상과동	48,000			
제 3 중복합비료 6-12-12 (딸기, 땅콩 전용)	제 3 중복합 비료 6-12-12 (딸기 기비용)	질소전량: 5% 인산전량: 12% 가리전량: 12% 유 기 물: 10%	질소전량: 6 % 인산전량: 12 % 가리전량: 12 % 구용성고토: 1 % 수용성붕소: 0.3% 유 기 물: 10 %	상과동	상과동	48,000			

1985. 7. 30

1986. 7. 30

비료의 종류 및 품목		보 증 성 분 량				기타의 생산능력 (년간, 년월일)	허가 년월일	변경 허가 년월일
변경 전	변경 후	유 효 성 분 량		유해성 분 량				
		변경 전	변경 후					
제3종복합 비료 10-4-6 (상전용)	제3종복합 비료 10-4-6 (상전용)	질소전량: 10% 인산전량: 4% 가리전량: 6% 유기물: 10%	질소전량: 10% 인산전량: 4% 가리전량: 6% 구룡성고토: 1% 수용성붕소: 0.3% 유기물: 10%	상과동	상과동	48,000	1985 5.23	1986 7.30
제3종복합 비료 9-14-8 (조지조 성용)	제3종복합 비료 9-14-8 (조지조 성용)	질소전량: 9% 인산전량: 14% 가리전량: 8% 유기물: 10%	질소전량: 9% 인산전량: 14% 가리전량: 8% 구룡성고토: 2% 수용성붕소: 0.2% 유기물: 10%	상과동	상과동	48,000		

제 1303 호

1986. 7. 30 16-13

비료의종류및품목		보 증 성 분 량				기타의	생산능력	허 가	변 경
변경전	변경후	유 효 성 분 량		유 려 성 분 량	규 격	(년간, 본)	년월일	허 가	
		변경전	변경후						
제3중복합 비료 10-6-8 (초지관 리용)	제3중복합 비료 10-6-8 (초지관리 용포도복 숭아기비용)	질소전량:10% 인산전량:6% 가리전량:8% 유기물:10%	질소전량:10% 인산전량:6% 가리전량:8% 구용성고토:2% 구용성분소:0.3% 유기물:10%	상 과 동	상과동	48,000	1985 5.23	1986 7.30	
제3중복합 비료 13-0-9 (원예주 비용)	제3중복합 비료 13-0-9 (원예주 비용)	질소전량:13% 가리전량:9% 유기물:10%	질소전량:13% 가리전량:9% 구용성고토:1% 구용성분소:0.3% 유기물:10%	질소, 인산, 가리 각각 의 최대주성분량의 합 계량의 함유율 1%에 대하여 황청산화물:0.025% 비 소:0.005% 아 질 산:0.02% 뷰렛태질소:0.01% 실 파 인 산:0.005%	상과동	48,000			

16-14 계 1303 호 시

표 1986.7.30

구 공 고

◎ 강서구청 공고 제 53 호

특정업사용기자재의제조업체행정처분공고

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23 조 1 항

규정에 의거 아래 특정업사용 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6. 7. 30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다 음

허가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위 반 사 항	조치내역	비 고
제 203 호	풍광산업	염창동 113-22	황필주	무단장소이전 (무단 전출또는 제업)	허가취소	

사 령

◎ 1986. 7. 23 경계 334 호
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수부교과과과장
 지방서기관 김 두 기

서기관에 임함
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상공과 과장
 에 포함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국국장
 지방서기관 이 정 규

서기관에 임함
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국국장에 포함

서울특별시 재무국 관재과 과장
 서기관 이 인 달

지방서기관에 임함
 동작구 재무국장에 포함

더 동 령
 서울특별시 상

◎ 1986. 7. 29 경계 335 호

강서구보건소
 지방약사 김 영 기

정신병원과전 ('86. 7. 29 - '86. 12. 31)
 서울특별시 상

